

의안 번호	1430	【울산광역시 중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3. 21.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3. 22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16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예산실장 김혜경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설립 타당성 등 심의와 경영 합리화 도모, 운영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임원의 해임 및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(안 제6조 및 제7조)
- 출자·출연 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8조)
- 성과계약서의 작성·평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경영실적 평가·진단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
-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
-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과 위원 구성, 위원장 및 임기 등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서 명기하고 있으며,
- 위원의 해임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도 시행령 제5조와 제6조에서 명기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중복 명시함이 없이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